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7 선고 2020가단502115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
담당변호사 이재민

피 고 1. A

2. B

변론 종결 2020. 7. 23.

판결 선고 2020. 8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은 81,864,850원 및 그중 80,849,740원에 대하여 2019. 7. 4.부터 2020. 1.28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80,849,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4.부터 2020. 2. 18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지위

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.

나. 피고들의 사기대출 신청

(1)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특별한 담보 없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대출해주는 '버팀목전세자금'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C은행은 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.

(2)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E호를 매도하거나 전세로 내놓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, 피고 B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쓰자고 제안하고,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. 피고들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, 피고 A은 2015. 2. 10.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B의 계좌로 계약금 1,000만원을 송금하고, 2015. 2. 11.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, 2015. 2. 16.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은행 정릉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

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. 또한, 피고 B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G(주) 명의로 피고 A에 대한 재직증명서, 급여대장 등을 건네주었으며,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묻는 C은행 직원의 질문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.

다.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등

(1) 한편, 피고 A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대출신청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5. 2. 16. 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같은 날 보증원금을 7,560만 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(이하,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한다)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A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.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같은 해 3. 9. C은행으로부터 8,4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은 임대인인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.

(2)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7. 3. 31.자로 사고처리가 되어 원고는 C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9. 7. 3. 위 대출원리금 합계 80,849,74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.

(3)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,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.

(4)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8%이고, 피고 A이 미납한 추가보증료는 1,015,110원이다.

라. 피고들의 형사처벌

피고들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216 사기로 공소제기가 되어 2018. 10. 26.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1 내지 11,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(원고와 피고 B사이에),

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(원고과 피고 A 사이에)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 A의 구상채무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81,864,850원(=대위변제금 80,849,740원+미수추가보증료 1,015,110원) 및 그중 대위변제금 80,849,74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. 7. 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. 1. 28.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8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 A과 공모한 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 A이 위 대출신청과 함께 원고에게 신용보증 신청을 하였고,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C은행에게 위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80,849,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. 2. 18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도2132 판결 등 참조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영수